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7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모경중 · 이건태 · 이주희
김문수 · 서영석 · 안태준
남인순 · 복기왕 · 김성희
김남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규모·시기 및 공급계약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 ③ (생 략)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④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u> <u>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u> <u>·구청장은 승인 대상 주택의</u> <u>입주자 모집 규모·시기 및 공</u> <u>급계약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u> <u>령으로 정하는 학령인구 유입</u> <u>규모 파악과 관련된 자료를 국</u> <u>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u> <u>·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여야</u> <u>한다.</u>